

- 50만을 넘어 “인구 70만” 대도시 조성을 위한 관내 중소기업 종사자 -
「김포 애(愛) 시민운동」 실거주 주소지 이전 동참 안내

- ◇ 우리 시에서는 인구 70만 대도시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관내 실거주 미전입 세대를 대상으로 주소지 이전을 독려하는 「김포 애(愛) 시민운동」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.
- ◇ 이와 관련, 관내 실거주 기업체 근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포 애(愛) 주소 갖기(주민등록 주소지 이전-전입신고)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.

주민등록법 제16조(거주지의 이동)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(轉入申告)를 하여야 한다.

- 참여 대상 : 관내 거주 기업체 종사자
 - ※ 2023년도에는 「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」 등은 참여기업 모집 시 주거지 확인 및 주소지 이전을 필수 조건으로 시행 예정
- 협조사항 : 기업체 구내식당 등 게시 홍보
- 문의 : 김포시청 기업지원과(☎031-980-2284)